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자산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FINEMMF1호(국공채)	○	-	-	-	-
2	미래에셋MMF1호	○	-	-	-	5), 6)
3	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	○	-	-	-	7)
4	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(국공채)	○	-	-	-	5), 6), 7)
5	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(국공채)	○	-	-	-	5), 6)
6	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	○	-	-	-	-
7	미래에셋법인전용MMFA-4호	○	-	-	-	-
8	미래에셋코리아중기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○	-	-	-	-
9	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○	-	-	-
10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-	-	-
11	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-	○	7)
12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13	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-	-	-
14	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○	-
15	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○	-	-	-
16	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○	-	-	-
17	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○	-	-	7)
18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	-	○	○	○	-
19	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○	-	-	-
20	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21	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-	-	-
22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23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24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
25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26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27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28	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29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-	-	-
30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-	-	-
31	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-	-	-
32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-	-	-
33	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-	-	-
34	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7)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2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3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5) 법 개정사항 반영
- 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7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11월 25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투자대상자산 추가

- 미래에셋FINEMMF1호(국공채)
-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
-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(국공채)
-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(국공채)
-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
- 미래에셋법인전용MMFA-4호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1. ~5. <중략> <u>6. <신설></u> <생략>	1. ~5. <중략> <u>6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 <생략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(1) 투자대상	<생략> <u>6. <신설></u>	<생략> <u>6. 환매조건부매수</u> <u>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

- 미래에셋MMF1호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<u>9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 <u><신설></u>	<u>9. <삭제></u> <u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</u> <u>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</u> <u>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</u> <u>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</u> <u>있다.</u> <u>1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 <u>2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</u> <u>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</u> <u>다.)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(1) 투자대상	<u>9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 <u><신설></u>	<u><삭제></u> <u>[환매조건부매수,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</u> <u>래]</u> <u>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</u> <u>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</u> 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</u> <u>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</u> <u>함.</u>

- 미래에셋코리아증기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	1. ~2. <생략> <u>3. <신설></u>	1. ~2. <생략> 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.</u>

2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- 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

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<신설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- 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지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-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

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환매조건부매수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	<u>6</u>	<u>5</u>	<u>0.39</u>	<u>0.8</u>
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4</u>	<u>3</u>	<u>9.58</u>	<u>10.24</u>
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	<u>4</u>	<u>3</u>	<u>9.58</u>	<u>10.23</u>
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<u>2</u>	<u>1</u>	<u>2</u>	<u>28.58</u>

5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	2. <생략> 나. <삭제>
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 대상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, <생략></p>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</p>

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7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